

의안번호	2212781
의 퇴 인	용혜인의원
회 답 일	2025.10.23.
추계번호	25D484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친밀관계폭력행위자 중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전자장치 부착률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율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578억 300만원(연평균 515억 6,100만원)
 - (시나리오2) 전자장치 부착률이 가정폭력범죄 재범율의 50%라고 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1,291억 8,300만원(연평균 258억 3,7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전자장치 부착률이 재범율과 일치)	42,719	46,900	51,456	56,415	60,312	257,803	51,561
시나리오2 (전자장치 부착률이 재범율의 50%)	21,407	23,500	25,782	28,267	30,224	129,183	25,837

주: 본 추계는 친밀관계폭력범죄 중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원 추정 시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재범자 중 일부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율을 참고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친밀관계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비율과 보호관찰명령 집행 비율이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2조(정의)	“친밀관계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0) 제2조제7호 ¹⁾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을 말함	
2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친밀관계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재량규정
	현행법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함	
3	안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은 현행법 제21조의5에 규정)	재량규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밀관계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인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제2호의 “가정폭력”과 제3호의 “교제폭력”을 포함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 있거나 과거 교제관계에 있었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2	안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	—
	현행법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	—
3	안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	—
	현행법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친밀관계폭력(현행 가정폭력과 새로 규정되는 교제 폭력)행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
- 본 추계에서 안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현행법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인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율(12.3%)과 비교하여 시나리오1(가정폭력범죄 재범율의 100%), 시나리오2(가정폭력범죄 재범율의 50%)로 추정하며, 각각의 비율은 추계기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연도별 친밀관계폭력사범 전체인원은 2020~2023년 3년간 평균 증가율인 6.9%씩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교제폭력 형사입건 및 가정폭력사범 전체인원 건수: 2020~2023년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교제폭력 형사입건건수(A)	8,951	10,538	12,828	13,939	—
가정폭력사범 전체인원(B)	49,755	52,437	51,023	57,786	—
친밀관계폭력 발생 건수(C=A+B)	58,706	62,975	63,851	71,725	6.9%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표 3] 연도별 가정폭력사범 인원 및 재범율: 2020~2023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평균
가정폭력사범 전체인원(A)	49,755	52,437	51,023	57,786	52,750
가정폭력사범 재범인원(B)	6,253	6,263	6,373	7,116	6,501
재범율 (C=B/A)	12.6%	11.9%	12.5%	12.3%	12.3%

주: 법무부에서는 가정폭력사범 인원 및 재범인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2023년도까지만 관리하고 있음

자료: 법무부

- 본 추계에서 전자장치 부착 1건당 단가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 집행액 평균을 전자장치 부착 평균 건수로 나누어 추정하며 (352만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²⁾을 적용하여 연도별 단가를 추정함

[표 4] 법무부 전자감독 예산 및 전자장치 부착 건수: 2020~2024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전자감독 사업 집행액 (A, 백만원)	18,687	22,215	27,449	30,677	33,502	26,506
전자장치 부착 건수(B, 건)	6,044	10,289	7,893	6,820	6,574	7,524
전자장치 부착 1건당 단가 (C=A/B, 백만원)	—	—	—	—	—	3.52

자료: 법무부 결산 사업설명자료 II-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3	1.9	2.0	2.0	2.0	2.0	2.0	2.0

- 본 추계에서 개정안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현행법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친밀관계폭력범죄 재범 건수에 5호 보호관찰처분비율(15.1%)을 적용하여 추정한 보호관찰 실시건수에 보호관찰명령 집행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표 5] 가정보호사건 처리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보호 처분	1호 접근행위제한	58	39	31	71	39	238
	2호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3	1	2	—	1	7
	3호 친권행사제한	—	—	—	—	—	—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	3,056	2,890	2,208	2,751	2,628	13,533
	5호 보호관찰(B)	1,843	1,610	1,357	1,876	1,660	8,346
	6호 감호위탁	—	—	—	—	1	1
	7호 치료위탁	103	168	116	97	164	648
	8호 상담위탁	5,751	4,719	4,803	5,736	6,376	27,385
	1·5호(C)	31	28	26	22	12	119
	3·5호(D)	—	—	—	—	—	—
	4·5호(E)	1,287	923	822	997	787	4,816
	5·8호(F)	605	520	594	804	758	3,281
	기타	623	457	524	689	648	2,941
	불처분	9,578	8,128	8,603	11,756	9,454	47,519
타법원으로 이송		177	206	220	270	248	1,121
기타		24	26	15	5	5	75
합계(A)		23,139	19,715	19,321	25,074	22,781	110,030
보호관찰 등 처분 비율 ((B+C+D+E+F)/A))							15.1%

자료: 대법원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9~2023년 가정보호사건의 전체 건수 대비 보호관찰 등의 처분 비율은 15.1%(16,562건÷110,030건)임
- 보호관찰 등 실시 1건당 단가는 법무부 “보호관찰활동” 세부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5개년도(2019~2023년) 집행단가 평균값인 49천원³⁾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3) 2019~2023년 보호관찰 등 실시건수 대비 사업 집행비용단가는 증감추세가 뚜렷하지 않아 5개년도 평균값을 적용

[표 6] 보호관찰 등 실시건수별 경비 단가 추정: 2019~2023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집행액(A, 백만원)	11,710	10,691	12,147	12,713	13,986	12,249
보호관찰 등 실시건수(B, 건)	228,975	232,591	266,531	271,523	251,264	250,177
실시건수별 집행액(A/B, 천원/건)	51	46	46	47	56	49

자료: 법무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전자장치 부착(안 제5조 및 제13조)

- 개정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 전자장치부착 인원에 전자장치부착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전자장치부착 인원은 친밀관계폭력범죄 발생 건수에 가정폭력범죄 재범율(시나리오1, 12.3%)과 재범자 중 전자장치 부착률에 따라 시나리오1(100%), 시나리오2(50%)를 적용하여 추계함

[표 7] 친밀관계폭력사범 인원, 전자장치 부착인원 및 전자장치 부착률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시나리오1 (전자장치 부착률이 가정폭력범죄 재범율과 일치)	친밀관계폭력 발생건수(A)	93,666	100,129	107,038	114,423	122,319
	가정폭력범죄 재범율(B)	12.3%	12.3%	12.3%	12.3%	12.3%
	전자장치 부착 비율(C)	100%	100%	100%	100%	100%
	전자장치부착 인원(D=A×B×C)	11,521	12,316	13,166	14,074	15,045

시나리오2 (전자장치 부착률이 가정폭력범 죄 재범율의 50%)	친밀관계폭력 발생건수(A)	93,666	100,129	107,038	114,423	122,319
	가정폭력범 죄 재범율(B)	12.3%	12.3%	12.3%	12.3%	12.3%
	전자장치 부착 비율(C)	50%	50%	50%	50%	50%
	전자장치부착 인원 (D=A×B×C)	5,761	6,158	6,583	7,037	7,523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친밀관계폭력행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8] 2027~2031년 연도별 전자장치 부착 대상 인원 및 추가재정소요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나리오1 (전자장치 부착률이 가정폭력 범 죄 재범율과 일치)	전자장치 부착 대상 인원(A, 명)	11,521	12,316	13,166	14,074	15,045	—
	전자장치 부착 1건당 단가 (B, 백만원)	3.7	3.8	3.9	4.0	4.0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42,627	46,800	51,347	56,296	60,180	257,250
시나리오2 (전자장치 부착률이 가정폭력 범 죄 재범율의 50%)	전자장치 부착 대상 인원(A, 명)	5,761	6,158	6,583	7,037	7,523	—
	전자장치 부착 1건당 단가 (B, 백만원)	3.7	3.8	3.9	4.0	4.0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21,315	23,400	25,673	28,148	30,092	128,630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보호관찰(안 제21조의2 및 현행법 제21조의5)

- 개정안에 따른 보호관찰의 추가재정소요는 친밀관계폭력 재범 건수에 보호관찰 등 처분비율을 적용한 보호관찰 실시건수에 보호관찰명령 집행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200만원, 2031년 1억 3,200만원 등 5년간 총 5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친밀관계폭력 재범 건수 (A, 건)	11,521	12,316	13,166	14,074	15,045	—
보호관찰 등 처분 비율 (B, %)	15.1%	15.1%	15.1%	15.1%	15.1%	—
보호관찰 등 실시건수별 집행액(C, 천원)	53	54	55	56	58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92	100	109	119	132	5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친밀관계폭력행위자 중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전자장치 부착률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율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578억 300만원(연평균 515억 6,100만원)
 - (시나리오2) 전자장치 부착률이 가정폭력범죄 재범율의 50%라고 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1,291억 8,300만원(연평균 258억 3,700만원)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전자장치 부착물이 재범율과 일치)	전자장치 부착	42,627	46,800	51,347	56,296	60,180	257,250	-
	보호관찰명령	92	100	109	119	132	553	-
	합계	42,719	46,900	51,456	56,415	60,312	257,803	51,561
시나리오2 (전자장 치 부착물 이 재범율 의 50%)	전자장치 부착	21,315	23,400	25,673	28,148	30,092	128,630	-
	보호관찰명령	92	100	109	119	132	553	-
	합계	21,407	23,500	25,782	28,267	30,224	129,183	25,8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친밀관계폭력범죄 중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원 추정 시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재범자 중 일부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율을 참고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친밀관계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비율과 보호관찰명령 집행 비율이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